

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

의안 번호	2602
----------	------

2021. 9. 7.
도시계획관리위원회
수석전문위원

1. 제안경위

- 2021. 8. 11. 김종무 의원 발의 (2021. 8. 18. 회부)

2. 제안이유

- 선진 옥외광고문화의 정착과 코로나19로 위축된 옥외광고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「옥외광고물법」에 규정된 사업자단체와 협력하여 옥외광고대상전, 광고문화 개선사업 등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광고물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옥외광고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옥외광고대상전 등 관련 단체가 수행하는 행사 및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30조)

4. 검토의견

- 이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 사업자단체가 수행하는 행사 또는 사

업에 시 예산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(사)서울특별시 옥외광고협회의 대한민국옥외광고대상 서울시 예비심사 비용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파악됨.

현행	개정안
<p>제30조(우수광고물 발굴 및 시상 등)</p> <p>① 시장 및 구청장은 옥외광고물의 수준 향상과 바람직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하여 우수광고물의 발굴·확산 노력을 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좋은간판 공모전을 실시하여, 좋은간판으로 선정된 점포주·광고주·제작자·광고사업자 또는 디자이너 등에 대해서는 영업 등에 관한 각종 지원을 할 수 있으며,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<신설></p>	<p>제30조(광고물등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한 지원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광고물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옥외광고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법제5조의2에 따라 옥외광고 사업자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각종 행사 및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광고물등의 관리에 관한 조사·연구</u> 2. <u>옥외광고대상전 개최</u> 3. <u>광고문화 개선사업 등</u>

- 대한민국옥외광고대상(이하, 옥외광고대상)은 한국옥외광고협회 중앙회(이하, 중앙회)에서 행정안전부, 한국지방재정공제회(한국옥외광고센터) 등의 후원을 받아 매년 주최하는 행사로서 시설치광고물과 창작광고물로 구분하여 시상하고 있으며, 상당수의 지자체에서 중앙회 본심사 전에 시·도 옥외광고협회의 예비심사가 수행되고 있음¹⁾.
- 좀 더 살펴보면, 중앙회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(이하, 옥외광고물법)²⁾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광역자치단체에 옥외광고협회(이하, 협회)를 두고 있고 기초자치단체에는 지부를 두고 있는 가운데³⁾,

1) 시·도 협회에서 지방예심을 거친 수상작품은 동상까지만 본심에 접수 가능하고, 지방예심이 없는 시·도 협회의 경우 본심에 바로 접수 가능

2)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

제11조의3(옥외광고 사업자단체의 설립 등) ① 옥외광고사업자는 광고물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옥외광고사업의 건전한 발전 및 종사자의 품위 향상을 위하여 옥외광고 사업자단체(이하 "단체"라 한다)를 설립할 수 있다.

②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.

③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광고물등의 관리에 관한 조사·연구
2.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및 옥외광고사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 시·도지사와 시장등이 위탁하는 업무
3.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

④ 단체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1.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의 등록을 한 자
2.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자

⑤ 단체의 정관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⑥ 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민법」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3) 중앙회 정관

제2조 【명칭】 ① 본 협회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3 규정에 따라 설립하고 한국 옥외광고협회 중앙회(이하 '협회' 또는 '중앙회'라 한다)라 칭한다.

제3조 【사무소】 ② 협회는 특별시, 각 광역시 및 각 도에 민법 제31조 또는 제42조, 제49조 내지 제97조에 의거, (사)서울특별시옥외광고협회, (사)부산광역시옥외광고협회, (사)대구광

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를 제외한 상당수의 시·도 협회에서 옥외 광고대상 예비심사를 수행하고 있고, 옥외광고물법⁴⁾ 및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시·도 협회 예비심사에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음(붙임1).

- 따라서, 이 개정조례안은 다른 지자체와 같이 서울시에서도 옥외광고대상 예비심사가 개최되도록 시 예산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, 이 조례가 개정되면 서울시 옥외광고협회에서 서울시 예산 3천만 원과 협회 예산 2천만 원으로 서울특별시옥외광고대상전을 개최할 계획임(동상 이상의 수상작은 본심사에 제출).
- 그 동안 옥외광고대상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이 없었던 것은, 다른 시·도와 달리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옥외광고물 시장을 해 왔기 때문으로(서울좋은간판 공모전, '21년 소요예산 5천 9백만 원)⁵⁾,

역시옥외광고협회, (사)인천광역시옥외광고협회, (사)광주광역시옥외광고협회, (사)대전광역시옥외광고협회, (사)울산광역시옥외광고협회, (사)경기도옥외광고협회, (사)강원도옥외광고협회, (사)충청북도옥외광고협회, (사)충청남도옥외광고협회, (사)전라북도옥외광고협회, (사)전라남도옥외광고협회, (사)경상북도옥외광고협회, (사)경상남도옥외광고협회, (사)제주특별자치도옥외광고협회, (사)세종특별자치시옥외광고협회를 시·도에 두며, 각 시·군·구에 지부를 둔다.

※ 중앙회와 시·도 협회는 행정안전부 및 해당 지자체 허가를 받아 각각 사단법인으로 등록

4)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

제5조의2(국가와 시·도의 지원 및 시·군·자치구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한다.

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(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)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고물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7. 우수 광고물, 모범 옥외광고사업자 및 제11조의3에 따른 옥외광고 사업자단체 등에 대한 지원 등 옥외광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5) 해당 세부사업 : 서울시 좋은간판 발굴·확산 ('21년 예산 1억 3백만 원 중 5천 9백만 원이

이 개정조례안은 유사 사업의 예산 중복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보여짐.

※ 공모전 비교 (자료: 도시빛정책과)

구 분	서울좋은간판 공모전	옥외광고대상	비고
주 최	서울특별시	한국옥외광고협회 중앙회	
주 관	서울특별시	한국옥외광고협회 중앙회	
후 원		행정안전부 등	
개최주기	매년	매년	
분 야	- 좋은간판(기설치 광고물) - 창작간판 - 간판개선지역	- 기설치 광고물 - 창작광고물(시안/모형)	서울시협회 참가 계획 -창작광고물 · 모형(성인) · 그림(초등학생)
시 상	- 총 19작품(시상금 1,450만원) - 훈격 : 서울특별시장	- 총 50작품(시상금 1,970만원) - 훈격 : 대통령상, 국무총리상, 행안부장관상, 회장상	

- 그러나, 서울시의 옥외광고물 시장 규모와 도시경관에서 옥외광고물의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, 서울시 자체 공모전 개최와 더불어, 옥외광고대상 지원을 통해 전국적 위상인 옥외광고대상 출품 및 수상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⁶⁾, 이는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과 광고인들의 사기 진작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- 또한, 옥외광고물법에서 옥외광고 사업자단체를 규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은, 민관파트너십을 통해 옥외광고물등의 효율적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취지로서,

서울좋은간판 공모전 예산임)

6) 옥외광고대상에 매년 100 건 이상이 출품되고 있으나, 최근 3년 서울시(협회, 개인) 출품은 전무함(전체 출품수: '20. 114건, '19년 125건, '18년 115건, 자료: 도시빛정책과)

서울시에서 협회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, 옥외광고물등의 경관성·공공성 증진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공공의 지도감독에 민간의 보다 적극적인 협력을 유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이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담당자	도시계획관리위원회 입법조사관 최정희
연락처	02-2180-8206
이메일	rienrien@seoul.go.kr

<붙임 1> 타 시·도 사례 (자료: 도시빛정책과)

단 체 명	옥외광고대상 예비심사	관련 조례	예산지원 현황
서울시	×	×	-
부산광역시	○	○	5:5매칭 (총예산 70백만원, 지원 35백만원)
대구광역시	○	○	5:5매칭 (총예산 27백만원, 지원 13백만원)
대전광역시	○	○	시비로 전액지원(25백만원)
울산광역시	○	○	시비로 전액지원(30백만원)
광주광역시	○	○	6:4매칭 (총예산 70백만원, 지원 40백만원)
인천광역시	×	×	-
세종시	×	×	-
강원도	○	○	7:3매칭 (총예산 29백만원, 지원 20백만원)
경기도	×	×	시군에서 추진
충청북도	○	○	7:3매칭 (총예산 40백만원, 지원 28백만원)
충청남도	×	×	시군에서 추진
전라북도	○	○	9:1매칭 (총예산 40백만원, 지원 36백만원)
전라남도	○	○	7:3매칭 (총예산 57백만원, 지원 40백만원)
경상북도	○	○	9:1매칭 (총예산 20백만원, 지원 15백만원)
경상남도	○	○	5:5매칭 (총예산 60백만원, 지원 30백만원)
제주도	○	○	5:5매칭 (총예산 40백만원, 지원 20백만원)

<붙임 2> 관련 법규

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

제5조의2(국가와 시·도의 지원 및 시·군·자치구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한다.

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(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)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고물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1. 광고물 및 관련 산업 발전의 기본방향과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
2. 지방자치단체의 광고물등에 대한 자율적 정비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
3. 광고주 및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의한 협력적 자율규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
4. 주민참여와 민간단체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그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
5. 옥외광고사업의 시설과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
6. 필요한 예산의 확보,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
7. **우수 광고물, 모범 옥외광고사업자 및 제11조의3에 따른 옥외광고 사업자단체 등에 대한 지원 등 옥외광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**

③ 시·도지사는 제2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시·군·자치구의 광고물등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과 특색 있는 발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등(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과의 협의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·광역시·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·도 단위의 지원계획을 수립·시행한다. 이 경우 시·도지사는 시장등에게 지원계획의 효율적 추진과 종합적 조정을 위하여 지도·조언 및 권고를 하거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.

④ 시장등은 제3항의 지원계획(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제2항의 종합계획을 말한다)에 따라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·추진하고, 자율관리구역 및 정비시범구역을 지정·운영하며, 광고주·옥외광고사업자 등의 자율적 규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우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
⑤ 시장등은 관광진흥, 세계화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(併記)하도록 할 수 있다.

⑥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등(제3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의 경우에는 시·도지사를 말한

다)은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개발·보급할 수 있다.

제11조의3(옥외광고 사업자단체의 설립 등) ① 옥외광고사업자는 광고물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옥외광고사업의 건전한 발전 및 종사자의 품위 향상을 위하여 옥외광고 사업자단체(이하 "단체"라 한다)를 설립할 수 있다.

②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.

③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광고물등의 관리에 관한 조사·연구

2.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및 옥외광고사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 시도지사 및 시장등이 위탁하는 업무

3.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

④ 단체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1.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의 등록을 한 자

2.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자

⑤ 단체의 정관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⑥ 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민법」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

제30조(우수광고물 발굴 및 시상 등) ① 시장 및 구청장은 옥외광고물의 수준 향상과 바람직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하여 우수광고물의 발굴·확산 노력을 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좋은간판 공모전을 실시하여, 좋은간판으로 선정된 점포주·광고주·제작자·광고사업자 또는 디자이너 등에 대해서는 영업 등에 관한 각종 지원을 할 수 있으며,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